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가덕도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163호, 2025. 12. 2. 공포, 2026. 3. 3. 시행)됨에 따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① 법 제9조의3에 따라

관계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에 대한 임시 거주 지원
2.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의 고용 추천
3.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 전환훈련의 실시
4.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 알선
5.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②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른 분묘의 이장(移葬),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및 지장물(支障物)의 철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① 법 제9조의 3에 따라 관계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u> <u>1.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에 대한 임시 거주 지원</u> <u>2.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의 고용 추천</u> <u>3.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u> <u>4.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 알선</u> <u>5.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주민의 재정착에</u>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의 지원

②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
업에 따른 분묘의 이장(移葬),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
착시설의 원상복구 및 지장물
(支障物)의 철거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
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
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	
연 락 처	(044) 201 - 5211